

2015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

【주요 개정 내용】 신·구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기본방침) ① 명덕외국어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근거는 “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(교육부훈령(제29호 2014.01.16) 및 교육과학기술부훈령(제282호 2013.2.15, 제257호 2012.6.29, 제239호 2012.1.27) 및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(2013, 서울특별시교육청)”으로 삼는다.	제2조(기본방침) ① 명덕외국어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근거는 <u>“초·중등 교육법 제25조(생활기록, 2013.12.30 개정), 교육부령 제1호(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, 2013.03.23 개정), 교육부훈령 제127호(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, 2015.01.09 개정)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(2015 개정판)”</u> 으로 삼는다. <u>(신규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하달로 인한 근거 변경)</u>
제6조 (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) 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초·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,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,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(교육부령 제1호, 2013.3.23),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(교육부훈령 제29호 2014.1.16,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 2012.1.27, 제257호 2012.6.29, 제282호 2013.2.15), 본 지침,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성적관리에 관한 관련 공문이나 지침 등에 준거하여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개정·보완한다.	제6조 (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) 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<u>“초·중등 교육법 제25조(생활기록, 2013.12.30 개정), 교육부령 제1호(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, 2013.03.23 개정), 교육부훈령 제127호(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, 2015.01.09 개정)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(2015 개정판),</u> 본 지침,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성적관리에 관한 관련 공문이나 지침 등에 준거하여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개정·보완한다. <u>(신규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하달로 인한 근거 변경)</u>
	제13조 (평가문제 출제) ⑩ <u>‘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’에 저촉되는 문항의 출제를 금한다.(법제정에 따른 항목 추가)</u>
제18조 (인정점 부여) 제8조 ③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한 결시(병결)(단,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.)	제18조 (인정점 부여) 제8조 ③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한 결시(병결) <u>(단,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.→삭제)(동조 ⑩항과 내용중복으로 인한 삭제)</u>
제19조 (성적일람표)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 담당 교사가 작성하되, 지필평가(명칭, 반영비율 등 명기)와 수행평가(영역, 반영비율 등 명기)의 점수를 합산하고, 원점수, 석차등급, 석차(동석차수)/수강자수, 과목평균, 과목표준편차를 산출(2014학년도 1학년	제19조 (성적일람표)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 담당 교사가 작성하되, 지필평가(명칭, 반영비율 등 명기)와 수행평가(영역, 반영비율 등 명기)의 점수를 합산하고, 원점수, 석차등급, 석차(동석차수)/수강자수, 과목평균, 과목표준편차를 산출(<u>2015학년도 1, 2학년</u>

보통교과는 원점수, 성취도, 석차등급, 석차(동석차수)/수강자수, 과목평균, 과목표준편차를 산출)하며,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	보통교과는 원점수, 성취도, 석차등급, 석차(동석차수)/수강자수, 과목평균, 과목표준편차를 산출)하며,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 (성취 평가제 확대실시로 인한 자구수정)
제21조 (석차등급, 성취도) ② 2014학년도 1학년 보통교과는 원점수에 따라 성취도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~ <표3> 단, 체육·예술(음악/미술) 교과(군)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. (2014학년도 1학년) <표4> ③ 2014학년도 1학년 보통교과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.	제21조 (석차등급, 성취도) ② 2015학년도 1, 2학년 보통교과는 원점수에 따라 성취도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~ (성취 평가제 확대실시로 인한 자구수정) <표3> 단, 체육·예술(음악/미술) 교과(군)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. (2015학년도 1, 2학년) (성취 평가제 확대실시로 인한 자구수정) <표4> ③ 2015학년도 1, 2학년 보통교과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. (성취 평가제 확대실시로 인한 자구수정)
제23조 (석차) ⑥ 고등학교의 보통교과 중 교양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(2014학년도 1학년은 ‘성취도’란과 ‘석차등급’란에 ‘P’를 각각 입력)하고, 이수여부를 ‘이수’로 입력하고, ‘세부능력 및 특기사항’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(2014학년도 1학년은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)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. ⑦ 2014학년도 고등학교의 1학년은 기초교과 중 기본과목(기초수학, 기초영어)을 이수한 경우 ‘성취도’란에는 ‘P(수강자수)’를, ‘석차등급’란에는 ‘P’를 각각 입력하고, 2014학년도 2,3학년은 ‘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’의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이 기본과목(기초과목) 또는 심화과목을 이수한 경우 ‘석차등급’ 대신 ‘이수’를 입력한다. 또한, ‘세부능력 및 특기사항’란에는 해당과목의 ‘이수기준’, ‘이수자수’를 입력하며, 해당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입력하지 않는다. ⑧ 보통교과(기초교과 중 기본과목, 체육·예술(음악/미술)·교양교과 제외)의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	제23조 (석차) ⑥ 고등학교의 보통교과 중 교양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(2015학년도 1, 2학년은 ‘성취도’란과 ‘석차등급’란에 ‘P’를 각각 입력)하고, 이수여부를 ‘이수’로 입력하고, ‘세부능력 및 특기사항’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(2015학년도 1, 2학년은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)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. (성취 평가제 확대실시로 인한 자구수정) ⑦ 2015학년도 고등학교의 1, 2학년은 기초교과 중 기본과목(기초수학, 기초영어)을 이수한 경우 ‘성취도’란에는 ‘P(수강자수)’를, ‘석차등급’란에는 ‘P’를 각각 입력하고, 2015학년도 3학년은 ‘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’의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이 기본과목(기초과목) 또는 심화과목을 이수한 경우 ‘석차등급’ 대신 ‘이수’를 입력한다. 또한, ‘세부능력 및 특기사항’란에는 해당과목의 ‘이수기준’, ‘이수자수’를 입력하며, 해당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입력하지 않는다. (성취 평가제 확대실시로 인한 자구수정) ⑧ 보통교과(기초교과 중 기본과목, 체육·예술(음악/미술)·교양교과 제외)의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

하인 경우, ‘교과’, ‘과목’, ‘단위수’, ‘원점수/과목 평균(표준편차)’, ‘성취도(수강자수)’(2014학년도 2, 3학년은 ‘원점수/과목평균(표준편차)’를 입력 하고, ‘석차등급’란에는 ‘석차등급’이나 ‘.’을 입력 한다. 다만,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 과목 이상인 경우에 ‘석차등급’란에 ‘석차등급’ 또는 ‘.’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 력한다.	하인 경우, ‘교과’, ‘과목’, ‘단위수’, ‘원점수/과목 평균(표준편차)’, ‘성취도(수강자수)’(2015학년도 3학년은 ‘원점수/과목평균(표준편차)’를 입력하 고, ‘석차등급’란에는 ‘석차등급’이나 ‘.’을 입력한 다. 다만,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 목 이상인 경우에 ‘석차등급’란에 ‘석차등급’ 또는 ‘.’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 다.(성취 평가제 확대실시로 인한 자구수정)
---	--